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안내

1. 관련: 산업보건과-1356('20.03.2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2.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단계로 기 공표('20.3.23)한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1단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2단계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배포하오니 각부처 및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 소관 업종의 협회, 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장에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빨간색 수정 내용 참조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문위원

김민지

보건의서관

이종걸

산업보건과장

전결 2020. 4. 23.

김동욱

협조자

시행 산업보건과-1869

접수 교통정책조정과-1858

(2020. 4. 23.)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748

팩스번호 044-202-8093

/ minji7748@korea.kr

/ 비공개(5)

"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